

서울특별시의회
제32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4.

서울특별시의회
심미경 의원(국민의힘, 동대문2)

□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가 철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. 먼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의장 방침으로 정해 운영해 온 방식을 법제화했습니다. 예컨대,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평가 등을 심의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위원 구성·임기·운영에 관한 규정,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, 연구수행 기관은 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 용역관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. 또한 연구용역비와 연구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 예산과목을 명시했습니다.

-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, 연구용역 범위를 설정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